

[미래일자리공작소] 금융혁신과 경제 특강

□ 노태석 박사님 특강내용

- 일시 및 장소: 2019년 11월 19일(화), 15:00-17:00 / S1441호
- 강연 제목: 금산분리 의미와 현황
- 강사: 노태석 박사님
- 참가 인원: 정문빈 외 30명

○ 특강 내용

1) 금산분리의 의미와 목적

- 금산분리란? :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금지하는 정책
 - 금산분리 정책 중 은산분리는 특히 은행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금지하는 것으로 좁은 의미로는 은행에 대한 소유제한을 의미
- 정책의 목적
 -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시장지배력의 확대와 남용, 금융시스템 리스크의 발생과 전이 등의 문제점 방지
 - 금융기관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의 사금고화는 금융산업의 부실을 초래할 위험이 큼

2) 금산분리 현황

- 은행에 대한 소유 제한(인터넷전문은행 제외)
 - 은행(은행지주회사 포함)의 의결권 있는 주식 4% 초과 보유 금지 (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10%까지 보유 가능)
 - 일반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금지
 -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경우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 금지

3)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 방지

- 은행(보험회사 포함)의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 15% 초과 소유 금지
-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주식 소유 금지(예외 있음)
 - ☞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(손자회사)인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 지배 가능
 - ☞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투자업자는 다른 회사 지배 가능
-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외의 계열회사의 주식 소유 금지
-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 수의 20%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승인을 받아야함

4) 비금융주력자 판단 기준

-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(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운영하는 회사)인 자의 자본총액(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)의 합계액이 동일인 중 회사인 자의 자본총액 합계액의 25/100이상
-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
 - ☞ 예외규정 : 은행이 기업 구조조정 목적으로 인수하는 회사는 제외
- 일정 요건의 투자회사, 흔히 뮤추얼펀드로서 비금융주력자가 그 발행주식총수의 4%를 초과해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투자회사
- 비금융주력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(PEF)의 출자총액의 10%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유한책임사원인 경우
- 비금융주력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(PEF)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
-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각각의 계열회사가 취득한 사모 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의 합이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30% 이상인 경우

5) 최근 환경 변화에 따른 금산분리 정책의 변화

- 기술과 금융의 결합인 Fintech 기업의 출현
- 금산분리 완화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 하는 방안 강구 필요



사진1



사진2